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
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(’21.1.12. 공포, ’22.1.13. 시행) 및 「지방공무원법」(’21.00.00. 개정, ’22.1.13. 시행)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

3. 주요내용

- 가.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(안 제4조)
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운영 가능
- 나.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 설치·운영에 관한 협의 대상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포함(안 제5조)
- 다.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장에 인사자료 요구 가능(안 제6조)
- 라. 지방의회의 의장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최신자료 유지 및 업무 재설계, 정보보호 등의 운영업무 수행(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, 제4항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2항, 제6조 제1항 및 제3항, 제7조, 제8조, 제9조 제1항 및 제2항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사전협의</u> 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특성에 맞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	제4조(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보급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의회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</u> ----- -----.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개발·보급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.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 은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 ----- ----- -----.
④ 그 밖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	④ ----- -----

항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	---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</u>----- -----.
제5조(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) ① (생략) ②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	제5조(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.
제6조(자료의 요구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목적을 위한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자료의 대상인물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	제6조(자료의 요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, <u>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.
제7조(최신자료의 유지) <u>지방자치</u>	제7조(최신자료의 유지) <u>지방자치</u>

<u>단체의 장</u>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.	<u>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
제8조(업무의 재설계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각종 행정 분류번호·서식 및 사무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에 적합하도록 재설계·표준화하고,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.	제8조(업무의 재설계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.
제9조(정보의 보호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②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행정안전부장관과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되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	제9조(정보의 보호 등) ①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</u>----- -----

· 변조 · 훼손 · 멸실 또는 전자
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
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60